

회계투명성과 국가경쟁력

고 영 일
인세회계법인 이사

얼핏 생각하면 회계투명성과 국가경쟁력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우리나라 는 회계의 투명성 부족과 이에 따른 재무회계정보에 대한 국제적 신뢰 저하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회계학회지에 서울대학교 곽수근 교수 외 두 분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발표한 ‘회계 투명성과 국가경쟁력’ 이란 좋은 연구보고서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 국가경쟁력

국가경쟁력이란 복잡한 세계경제환경에서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가의 능력 으로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때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 및 정 책을 제공함으로써 우위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

국가경쟁력은 다양한 평가기관에서 서로 상이한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측정 발표하고 있으나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WEF(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지수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음.

IMD 국가경쟁력 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0년대에 들어서는 2001년 29위,

2009년 27위(조사대상 국가 57개국)로 큰 변동이 없음. 투명성 관련지표는 기업경영효율 부문에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회계와 감사부분 투명성이 포함되어 있음.

특히 감사 와 회계투명성지표는 2005년부터 포함되기 시작하여 국가경쟁력 지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금융기관의 투명성 부분과 회계와 감사의 투명성 부분은 우리나라의 전체 순위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와 감사부문의 투명성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9년 19위(조사대상국 134개국)로 IMD에서 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회계투명성을 표현하는 직접적인 지표는 없으나 간접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적 제도(Private Institutions)의 회계감사와 보고기준의 강점 항목에서 2009년에 36위로 국가경쟁력 전체순위에 비하여 낮게 평가 되고 있음.

■ 회계투명성

회계투명성은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의사 결정자들이 관련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적시에 공시하는 것을 의미함. 회계투명성은 수준 높은 회계기준, 즉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회계기준의 적용 뿐만 아니라 이 기준에 따라 경영자들이 회계정보를 작성하는지 감시·감독하는 관련 법규 및 제도, 공시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공시수단의 적절성, 경영자의 보고 실무관행 등 제반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음.

회계정보의 투명성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투자자들의 경제행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 해당기업의 시장유동성, 자본비용, 경영 및 투자 의사 결정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는 회계투명성이 간접적으로 국가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함.

■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평가

2009년 IMD 보고서의 회계투명성 관련 세부항목을 보면 ‘주주권 행사의 충실성(51위)’, ‘금융기관의 투명성(32위)’, ‘기업이 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감독(54위)’, ‘감사와 회계관행(39 위)’ 등으로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음.

2009년 WEF 보고서의 회계투명성과 관련한 세부항목을 보면 ‘회계기준 및 감사강도(58위)’,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57위)’, ‘소수주주의 이익 보호(73위)’, ‘금융시장의 성숙도(57위)’, ‘국내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의 용이성(38위)’, ‘투자자 보호정도(55위)’ 등으로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음. WEF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적절한 회계기준과 투명성이 기업의 부정을 적발하고 기업지배구조의 우수성을 보증하며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국제학계의 연구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이 매우 약하고 공시규정의 집행력이 매우 낮으며 소수주주의 법적 보호 장치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회계투명성과 자본비용간의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살펴본 다수의 연구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 및 관련 법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회계투명성이 우수하고, 회계투명성이 우수할수록 자기 및 타인 자본비용이 낮아진다는 공통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불투명성지수(Opacity Index)

불투명성 지수는 각국의 실무관행의 투명성 척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2001년부터 PwC와 Milken Institute가 35개의 세계 주요국가에 대해 1년이나 2년 주기로 발표해 오고 있는 지수이며, 2004년부터 대상국가가 48개국으로 확대되었음. 이 지수의 목적은 기업, 금융, 그리고 정부가 공유하게 되는 분야에서 투명하고, 정확하고, 공식적이며, 명쾌하게 널리 인정되는 실무관행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임. 지수는 부정적 사회자본으로 생각되는 다섯 부문의 점수를 계산한 후 이 부문들의 단순 평균점수로 산출함.

$$O = (C+L+E+A+R)/5$$

O는 불투명성 지수(Opacity Index), C는 부패관행정도(Corruption), L은 법률제도의 부적절성(Legal system inadequacies), E는 경제적 강제정책(Economic enforcement policies), A는 회계기준과 기업지배

구조의 불투명성(Accounting standards and Corporate governance), R은 규제의 불투명성(Regulation)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의 불투명성 지수 기준 전체 순위는 2004년 26위에서 2009년 22위로 상승하고 있음. 이는 지수계산에 포함된 국가들 내에서의 투자위험성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의미함. 그러나 회계기준 및 지배구조부문(A)의 불투명성 정도가 2004년부터 2009년 동안 계속해서 30점으로 전혀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음.

■ 코리아 디스카운트

2009년 조사대상국 전체의 회계불투명성 부문에 대한 평균점수가 20.4점이고 우리나라의 회계분야 불투명성 점수가 30점임을 고려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낮은 평가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Hail and Leuz(2006)의 국가별 자기자본비용과 불투명성 지수(Opacity Index)사이의 관계를 다음의 회귀식을 통해 계산하였음.

$$\text{자기자본비용}(\%) = 7.479 + 0.166 * \text{Opacity Index}$$

$$(t=3.51)$$

그 결과, 불투명성 지수가 1단위 증가할 때마다(1단위 불투명해 질 때마다) 자기자본비용은 0.166% 증가함.

Qi et al(2010)의 국가별 타인자본비용과 불투명성 지수 사이의 관계를 다음의 회귀식을 통해 계산하였음.

$$\text{타인자본비용}(bp) = -133.783 + 9.747 * \text{Opacity Index}$$

$$(t=6.17)$$

그 결과, 불투명성 지수가 1단위 증가할 때마다(1단위 불투명해 질 때마다) 타인자본비용은 9.747 basis points(bp) 증가함

국가별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 및 불투명성 지수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회계 불투명성 항목 수준이 국가경쟁력이나 GDP 대비 무역량 규모면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오스트리아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오스트리아 수준(10점)으로 감소한다면 현재 수준(30점)에 비하여 20점 정도 회계부문 불투명성이 감소됨. 이는 불투명성 지수에 4.0($=20/5$)점의 감소를 가져오고 불투명성 지수의 4.0점 감소는 자기자본비용을 0.66% 만큼 감소시키고, 타인자본비용은 38.99bp 만큼 감소시킴. 이는 200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를 약 38조원 만큼 추가로 증가시키고 타인자본비용은 약 15조원(30% 세금효과를 가정)이 추가로 감소하며 이는 2008년 우리나라 GDP(약 1,024조원) 대비 1.49%에 해당하는 금액임. 다시 말해 국가경쟁력과 무역량이 비슷한 국가 수준으로 회계 투명성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 38조원 정도 주식시장의 가치가 증가하지 못했고 이자비용은 약 15조원 만큼 추가로 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회계투명성의 향상은 ‘경쟁력있고 투명한 선진시스템 구축’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은 물론 법과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격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회계투명성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계인프라, 법체계, 비 법체계에서 영향을 받음. 회계투명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성공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회계감독제도, 감사제도를 마련하고, 이러한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제도 정비와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임.

1. 회계감독제도의 개선

국제회계기준 시대에 맞는 회계정보의 산출, 감독 및 제재과정상의 관련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체계와 비법체계(extra-legal system)의 정비가 중요함.

1.1 금융감독원 등

- 기업들의 회계정보 공시감독업무 및 감사인들에 대한 사후 감리 업무의 선진화

- 규정중심 감독에서 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 사전예방적 감독강화

1.2 상장기업 감사인 감독제도 개선

- 감사인 감독기관을 기업의 회계처리 및 공시에 대한 감독기관과 분리하여 전문화 및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는 선진 국가들의 감독체계와 일치시킴
- 일관되고 효율적 감독체계를 위해 상장기업 감사인에 대한 등록, 감독, 제재 권한을 감사인 감독기관에 일원화

1.3 국제회계기준시대에 맞는 감리제도의 마련

- 종속회사의 재무제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연결실체 전체에 대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연결회사 감사인의 책임화
- 감사보고서 감리는 특이사항이나 위법사항의 발견시 수행하고,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감리로 일원화
-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 항목과 재무비율 등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에 적절한 감리선정기준의 변화 필요

1.4 투자자보호를 위해 회계감독의 적시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감사인 중심의 간접 감독제도보다는 기업에 대한 직접감독제도로의 제도 변경 고려
- 회계정보의 산출에 주된 책임을 갖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 공시된 회계정보의 정정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 등 수행

1.5 기업지배구조관련제도의 개선

-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의 국제기준 수준으로 개선
- 국제적 수준의 효과적인 감사위원회 제도 운영

1.6 국제회계기준 실행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조속 조성

-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적격성 확보방안 강구
- 정부감독 vs 시장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노력 필요

2. 회계감사제도의 개선

2.1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감사인의 선임 및 권한과 관련하여 지배회사 감사인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화하면서 연결감사인이 종속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
-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 감사인과 종속회사 감사인의 일치여부에 따라 감사과정에서의 효율성과 책임문제 등이 대두

2.2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모든 기업들에 대한 미국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과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미국 감사위원회제도에서는 감사인의 선임, 평가, 대체 및 보수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을 감사위원회가 갖고 있어 우리나라의 감사인보다 경영자로부터 더 독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위원회 제도가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법인에 대해서만 요구되고 있어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를 모든 상장법인으로 확대하는 조치 등을 고려할 필요성 있음.
- 상장법인 감사인에 대한 등록, 감독 및 제재권한을 일원화하여 일관되고 효과적인 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유지하여 상장법인에 대한 회계정보산출과정의 감독과정을 향상 시킬 필요성이 있음

2.3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신국제감사기준을 조속히 도입,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음.

2.4 가격경쟁에서 품질경쟁(감사능력, 영어)으로 감사인의 경쟁방식을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2.5 회계법인내에서도 급변하는 회계환경에 맞는 능력을 갖춘 공인회계사 및 회계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야 함.

3.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3.1 국제회계사연맹 등에서 제시하는 국제교육기준 등에 부합하는 국제적 수준으로 인정받는 회계교육 실시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해야 함.

3.2 국제회계기준에 맞도록 회계학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 (현행회계기준은 규정중심)
- 전문적 판단의 중요성 및 훈련

3.3 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실사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계법인과 대학 교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함.

3.4 회계전문대학원 도입

3.5 기업의 회계전문 인력 양성

- 중소기업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도입 지원체계 필요
- 회계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필요
- 국제회계기준 전담인력 양성 및 충원 필요
- 국제회계기준 관련 조직의 신규/추가 및 업무분장 필요
-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전문가의 활용과 재무인력 통합관리 필요

4. 세제개편

국제회계기준과 상응하는 세법을 제정하여 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기업들은 세법과 재무회계기준이 다른 경우 성문법국가인 경우 세법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기업이 재무보고상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법과 국제회계기준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없도록 세법이 개정되어야 함. 우리나라의 세법과 국제회계기준이 상충하는 경우 대외적으로 우리의 회계정보 신인도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음.

5. 회계기준원의 역할 강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기준 제정 참여를 위한 사전적 역할 강화와 회계산업 발전의 사후적 역할 수행으로의 역할 재정리와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연구내용 등 활동 산출물이 공공재의 성격이므로 정부차원에서 운영이 필요함.

6. 국제적 회계신인도 개선 노력

우리나라가 회계정보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하고 있는 노력을 회계정보 이용자와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음. 해외 평가기관 및 국내 평가 대행기관에 회계산업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유도하여야 함.

국내 회계투명성에 대한 영문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외평가기관에 제공할 필요가 있고 해외 정보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공시하는 정보를 영문으로도 제공하게 해야 함.

이용자의 회계정보 투명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회계감독 및 기준제정기관에 이용자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